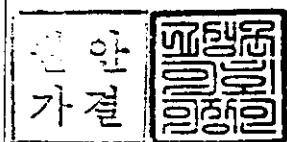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298호
의결년월일	1995. 7. 31. ( 제 35 회 )

의  
결  
사  
항



##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발의자	최정훈의원 외 3인
발의년월일	1995. 7. 21

#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2 9 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7. 21

발의자 : 최정훈의원 외 3인

## 1. 제안이유

-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('94. 11. 24 조례 제1381호)됨에 따라 소관 상임 위원회를 지정하고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'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추가 지정하고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나. "특별위원회"의 조명을 "특별위원회의 설치"로 변경(안 제7조 조명)
- 다.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보완(안 제7조제1항)
- 라.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규정(안 제7조제4항)
- 마.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의무규정(안 제7조제5항)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시행령증개정령(대통령령 제14703호)
-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(조례 제1381호)

##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(안) 중 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농촌지도소 다음에 "위생환경사업소"를 삽입한다.

제7조 조명중 "특별위원회"를 "특별위원회의 설치"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           (생략)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  2. 산업건설위원회            사회진흥과, 환경보호과, 산업과, 축산과, 지역경제과, 산림과, 수산과, 건설과, 도시과, <u>농촌지도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1. 현행과 같음            2. 산업건설위원회            사회진흥과, 환경보호과, 산업과, 축산과, 지역경제과, 산림과, 수산과, 건설과, 도시과, <u>농촌지도소, 위생환경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~③ 현행과 같음        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          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여야 한다.</p>